#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577

발의연월일: 2024. 10. 7.

발 의 자: 박준태・박성민・최보윤

이헌승 • 고동진 • 백종헌

박충권 • 박덕흠 • 정희용

장동혁 · 김희정 · 박수민

곽규택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성범죄에 한정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하는 수사하는 이른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법제화하고 있음.

한편 미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마약류범죄를 수사하기 위하여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위장수사를 통하여 마약류, 벌법무기등의 유통채널이었던 다크넷을 검거한 사례가 있는 등 마약류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도입된 신분 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경찰, 해양경찰, 검찰 등의 마약 범죄수사에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신분위장수사, 긴급 신분위장 수사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절차 등을 추가하는 등 수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상응하는 기본권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9까지 신설 등).

#### 법률 제 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마약류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3조·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범죄(이하 "마약류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리는 마약류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 거래
- 3. 마약류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 ③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제4조의3(마약류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 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 ④ 제3항의 신청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
    ·기간·장소·방법 및 해당 신분위장수사가 제4조의2제2항의 요건
    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법원은 제3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부한다.
  - ⑥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⑦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2제2항의 요건이 존속하여 그 수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 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조의4(마약류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4조의2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4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4조의3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 제4조의5(마약류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사법경찰관리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1.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 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2.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 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 3.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 4.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 제4조의6(수사기관의 장과 국회의 통제) ① 수사부서의 장은 신분비공 개수사가 종료된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수사기 관의 장에게 수사 관련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수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의7(비밀준수의 의무) ① 제4조의2부터 제4조의6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집행·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8(면책)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법행위가 「국가공무원」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③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법경찰관리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4조의9(수사 지원 및 교육) 수사부서의 장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승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 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고,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1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4조의7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 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신 설>	제4조의2(마약류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3조·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범죄(이하 "마약류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한다)할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마약류범죄를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한다)를할수 있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신 설>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 <u>거래</u>
- 3. 마약류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 ③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4조의3(마약류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러가를 청구한다.
- <u>④ 제3항의 신청은 필요한 신</u> 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

상・범위・기간・장소・방법 및 해당 신분위장수사가 제4조 의2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사 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 여야 한다.

- ⑤ 법원은 제3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한다)를 신청인에게 발부한다.
- ⑤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 ·장소·방법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①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의2제2항의 요건이 존속하여

   그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

<신 \_설>

<신 설>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 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 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의4(마약류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① 사법경찰 관리는 제4조의2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4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 분위장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4조의3제7항 및 제8항을 준 용한다.

제4조의5(마약류범죄에 대한 신 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

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사법경찰관리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수 없다.

- 1.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 장수사의 목적이 된 마약류범 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 오
- 2.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 장수사의 목적이 된 마약류범 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 우
- 3.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 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 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 4.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4조의6(수사기관의 장과 국회 의 통제) ① 수사부서의 장은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즉시

<신 설>

<신 설>

<신 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 사 관련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7(비밀준수의 의무) ① 제 4조의2부터 제4조의6까지에 따 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 위장수사에 대한 승인·집행· 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 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 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8(면책) ① 사법경찰관리 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 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

- ② 제1항에 따른 위법행위가 「국가공무원」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 도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③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 위장수사 행위로 타인에게 손 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법경 찰관리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 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4조의9(수사 지원 및 교육) 수
사부서의 장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승인하거
나 보고받은 경우 사법경찰관
리에게 수사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하고,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u><신 설></u>

7. ~ 12. (생 략) ②·③ (생 략)

제61조(벌칙) ①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4조의7을 위반하여 직
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
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
<u>한 자</u>
7. ~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